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3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이성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규남,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박 석, 박영한, 서상열,
서호연, 송경택, 신복자,
유정희,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정준호,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함. 특히 피마자 유박비료의 경우 다른 유기농 비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비료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 도심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화단에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비료에는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어 이를 반려동물이 먹고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장이 공원, 산책로 및 아파트 단지 등에 유박비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제한이 어려울 경우 유해 물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해당 장소에 공지하여 유박비료의 살포를 막고 반려인에게도 주의를 주어 반려동물이 폐사하는 경우를 막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제한이 어려운 경우 유해 물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반려동물 유해물질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이 어려운 경우 유해 물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해당 장소에 공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그 밖에 반려동물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30조(반려동물 유해물질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이 어려운 경우 유해 물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해당 장소에 공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그 밖에 반려동물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이 도시공원 및 공동주택 등 반려동물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공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